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김영진·허영·이연희  
이해식·차지호·김윤  
안태준·한민수·소병훈  
조승래·이정현·염태영  
진성준·권칠승 의원  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 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, 처리실적 관리,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·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해양경찰청은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·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·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

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또한,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·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'실지 확인'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'출입·검사' 업무는 함정·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·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9조 개정 등).

##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

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